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체등급 7급 판정자에 대한 치료비 등 국가 지원 >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29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3. 12.

다. 회부연월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는 병역의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들 대다수는 20대 청년으로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자립 이전 단계에 있어,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은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나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게 될 경우,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저해되어 군 복무 부적응이나 부당한 병역 면탈 논란 등 병역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에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

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확한 병역 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 치료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취약계층에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5. <u>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u>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이 경우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행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1급~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7급의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현행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있음.

「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한편, 현행법 제79조제1항¹⁾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1)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여비, 의료기관 위탁검사비용 등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등급 7급을 판정받고 재신체검사를 받기까지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7급 판정자 본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

- 최근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는 처분인원 대비 2.9%인 6,8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7급 판정 받은 비율이 73.6%에 이르고 있음.

<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 현황 >

(‘25. 12. 31. 현재, 단위: 명)

구분(처분인원)	계	%	정신과	%	정신과 외	%
평균(237,071)	6,793	(2.9)	5,007	73.6	1,785	26.4
’25년(222,425)	7,312	(3.3)	5,632	77.0	1,680	23.0
’24년(221,604)	6,876	(3.1)	5,362	78.0	1,514	22.0
’23년(238,604)	6,387	(2.7)	4,673	73.2	1,714	26.8
’22년(248,361)	6,913	(2.8)	5,087	73.6	1,826	26.4
’21년(254,361)	6,475	(2.6)	4,283	66.2	2,192	33.8

-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신체등급을 받게 되는데, 재신체검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질병이나 심신장애에 대한 치료 여부와 치료 수준은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강제할

-
-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이로 인해 치료비 부담, 학업·직장생활에 대한 우려,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는 의도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그 결과, 조기에 치료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병역처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신체등급을 7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 치료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여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최종 신체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 실제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점 및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군 복무 중 부적응 가능성을 줄여 군 조직의 안정성과 복무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및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따른 치료 접근성의 격차를 줄여 보다 공정한 병역판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징집·소집·신체검사 등 병역처분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 한정되어 있는데, 치료를 진행한 경우에도 군 복무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병역법」의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적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둘째, 최근 5년간 7급 재신체검사자의 병역이행 현황을 보면,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처분이 감소 추세에 있는바, 재신체검사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병역자원의 확보가 특별히 요구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최근 5년간 재신체검사 판정 후 처분 현황 >

(단위: 명, 2025.12.31. 기준)

구분	현역 등	보충역 등	대체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병적제적 등
2021	2,161	2,491	2	1,639	35	107	40
	33.4%	38.5%	0.0	25.3%	0.5%	1.7%	0.6%
2022	2,263	3,683	71	736	16	178	34
	32.7%	53.3%	1.0	10.6%	0.3%	2.6%	0.5%
2023	1,936	3,514	1	650	17	249	15
	30.3%	55.1%	0.0	10.2%	0.3%	3.9%	0.2%
2024	1,780	1,287	0	470	21	1,522	9
	25.9%	18.7%	0.0	6.8%	0.3%	22.2%	0.1%
2025	43	43	0	9	0	7214	3
	0.6%	0.6%	0.0%	0.1%	0.0%	98.7%	0.0%

셋째, 7급 판정자에 대한 국고지원시 연간 37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국고지원으로 치료를 진행한 경우에도 군 복무가 불

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 7급자 치료비 지원 국고부담 병역법 개정 시 소요예산²⁾ >

(단위: 여명, 억원)

구 분		계	정신과	그 외 과목
① 7급 대상 전원 지원	대상	6,800	5,000	1,800
	소요비용	37.1	32	5.1
②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630	140	490
	소요비용	1.6	0.5	1.1

넷째, 개정안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급여법」³⁾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 및 병무청은 再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확한 신체등급을 판정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7급 판정의 사유를 정신건강상 문제로 한정하고, 지원범위 및 대상을 예산의 범위 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병무청 추산

3)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기획예산처는 병역법의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낮고, 병무청 업무로 보기 곤란하며, 병역의무자들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침해할 소지,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